

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고광민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1086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3년 08월 14일

발 의 자: 고광민 의원(1명)

찬 성 자: 강석주, 곽향기, 김규남, 김길영, 김동욱, 김영철, 김용일, 김용호, 김원중, 김원태, 김재진, 김지향, 김춘곤, 김태수, 김형재, 김혜영, 남궁역, 남창진, 문성호, 민병주, 박상혁, 박·석, 박영한, 박환희, 서상열, 송경택, 신복자, 옥재은, 유만희, 유정인, 윤기섭, 윤종복, 이봉준, 이상욱, 이승복, 이종태, 이종환, 임춘대, 최민규, 최진혁, 허·훈, 홍국표, 황철규 의원(43명)

1. 제안이유

- 공동주택 대지 내에 조성된 공공보행로 사용을 놓고 발생하는 주민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 차원에서 공동주택 대지 내에 조성된 공공보행로의 유지·관리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시장은 공동주택 대지 내에 조성된 공공보행로 정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 신설(안 제11조 제2항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공동주택관리법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시장은 공동주택 대지 내에 조성된 공공보행로를 입주자가 아닌 시민이 이용하고 있거나 공공의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보행로 정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1조(공동주택관리업무 필요비용 지원) ① (생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11조(공동주택관리업무 필요비용 지원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② 시장은 공동주택 대지 내에 조성된 공공보행로를 입주자가 아닌 시민이 이용하고 있거나 공공의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보행로 정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</u></p> <p>③ (현행 제2항과 같음)</p>